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소속 법인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안건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 임원,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 당사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등이 어려운 경우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